

#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 이유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건립함에 있어, 한약재의 품질관리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국내산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과,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탁업체는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 저장, 가공유통으로 한약재 재배농가 및 관련업체 지원과 기타 수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나. 한약재 전문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수탁자에게는 5년으로 함. 단, 재임대할 경우 3년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오염 등 부적절한 한약재의 가공, 유통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 및 한약재의 가격 폭등, 폭락 조장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다. 임대료(사용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이상으로 함.  
다만, 최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 민가투자법에 의한 총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함
- 라. 평창군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 가공, 저장 유통

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관련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자를 선정 함.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실시( 2008.09.12 ~ 10.02), 제출된 의견 없음.

#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시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 등 한약재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유통지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한약재의 가공·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
5. “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둔다.

## 제2장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제4조(사업) 유통지원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2.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
3. 기타 수익사업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창군 및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가공·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것.
3. 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른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 확보.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
3. 한약재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 제3장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지원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산지원료수집·품질검사·가공·유통 계획을 포함한다)
3. 기타,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①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한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4장 비용의 부담

제13조(이용료) 위탁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사용료) ① 유통지원시설의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재산평정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16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을 기록한 장부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제13조 관련)

1. 품질검사 수수료

○ 국산(지역특산) 한약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검 사 항 목		요 금
확인시험		3,000
순도시험(1항목 당)		3,000
건조감량		2,000
회분		3,000
산불용성회분		4,000
정유		5,000
엑스함량(1항목 당)		3,000
정량		7,000
아플라톡신		10,000
잔류이산화황		10,000
중금속	총중금속	5,000
	개별중금속	15,000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농약	80,000
	개별농약(품목당)	20,000
	식품공전 검사방법 적용농약(품목당)	80,000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저장 수수료

○ 저장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m<sup>3</sup>·월)

구 분	요 금	비 고	
저온저장	m <sup>2</sup> 당	13,000원	- 1m <sup>2</sup> 미만 물량은 1m <sup>2</sup> 으로 봄
	박스당	10,700원	- 1박스 미만 물량은 1박스로 봄
동결료	560원/20kg	- 20kg이하는 20kg으로 봄	

※ 박스 규격은 1,010mm(폭) × 1,210mm(길이) × 1,165mm(높이)로 하며, 규격이 달라질 경우 상기 요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하차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3. 가공수수료

○ 가공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건조중량 기준, 단위 : 원/kg)

품목류	요 금					비 고
	세척	건조	절단	포장	계	
잎, 줄기류		250	100	400	75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뿌리류	300	500	100	300	1,200	
껍질류		200	100	300	60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덩이줄기(괴경)류	200	400	100	300	1,000	
꽃 류		500		400	90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열매, 씨앗류	100	400	100	300	900	

※ 훈증 등 추가 가공이 필요한 법제품목 및 인삼/홍삼류는 이용자와 별도 협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상·하차비는 운영업체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품목 구분 예시

구 분	품 명
잎, 줄기류	곽향, 구절초, 구맥, 권백, 박하, 백굴채, 백화사설초, 삼백초, 상업, 선학초, 애엽, 어성초, 오가피엽, 왕불유행, 음양곽, 익모초, 인동, 인진, 자소엽, 죽엽, 지구자엽, 측백엽, 택란, 포공영, 하고초, 한련초, 현초, 형개, 희렴, 향유, 목통, 방기, 벌나무, 오가피목, 쟈피나무, 지구자목, 자단향, 죽여, 통초
뿌리류	건강, 갈근, 강활, 지황, 고본, 고삼, 골담초, 길경, 남성, 당귀, 대계, 대황, 독활, 등굴레, 잔대, 목향, 목단, 백모근, 백지, 백출, 사삼, 산약, 석창포, 세신, 속단, 시호, 식방풍, 우슬, 원방풍, 유근피, 작약, 지모, 전호, 지유, 천궁, 천화분, 창출, 토복령, 토천궁, 해당근, 현삼, 황금, 황기, 향부자
껍질류	꿀피, 두충, 드릅나무피, 상백피, 소백피, 오가피, 유피, 지구자피, 진피, 청피, 합환피, 해당피, 화피, 황백, 후박
덩이줄기(괴경)류	맥문동, 반하, 백복령, 백부자, 백수오, 천마, 택사, 폐모
꽃류	감국, 금은화
열매, 씨앗류	건울, 결명자, 과루인, 맥아, 복분자, 사상자, 상기생, 연교, 자소자, 오가피열매, 의이인, 창이자, 천초, 홍화자, 흑두, 구기자, 대추, 산수유, 오미자, 목과, 산사, 지실, 치자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되, 인삼/홍삼류는 제외.

[ 별지 제1호 서식 ]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① 법인명(성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 :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평 창 군 수 귀하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8852호]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참고)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 시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93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

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③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조례 제8852호]

제22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약사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3호], 시행일 2008.12.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73조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수입한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호, 2005. 5. 26]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 제2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